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15누1133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redacted]공사

피고, 항소인 1. [redacted]군수

2. [redacted]시장

3.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구합1086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 13.

판 결 선 고 2016. 1. 27.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4.에 한 재산세 2,487,120원의 부과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중 2,388,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시장이 2014. 9. 3.에 한 재산세 1,599,340원의 부과처분 중 1,535,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피고 [redacted]군수가 2014. 9. 1.에 한 재산세 517,210원의 부과처분 중 496,7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경란

판사 방태경

판사 박준범